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9.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8월 25일 백남환 의원 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9월 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백남환 의원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종전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을 구분함은 물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당 안건 심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하였고, 또한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해 기간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나.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실시(안 제4조제1항)

- 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복지, 문화, 교육, 취업지원, 교통, 청소, 경비 등) 신설(안 제4조의2)
- 다.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함(안 제4조제3항)
-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위원회 위원해촉 규정을 둠(안 제7조)
- 마.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바. 구청장은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8조제5항)
- 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안 제13조의2)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의 행정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행정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외 116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종전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다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이를 개선하고자 구청장은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실시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을 복지, 문화, 교육, 취업지원, 교통, 청소, 경비 등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은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위원회 위원 해촉규정을 둠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함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위탁기간 연장 시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상황의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저촉됨이 없고, 2015.8.26.~ 8.3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음.
-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은 117개소로 사업규모나 사업금액이 각각 다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내에 51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민간위탁 사업 종류 및 관계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을 각각하고 있는 등 통일성이 없으며, 당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처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및 재위탁 할 때에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대부분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서 개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부분을 제외한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 시 마다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해야만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이 될 것임.
- 관계 법규 및 타 자치구와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대상은 117개 사업에 약 279억 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 사업대상 및 민간위탁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5년도 마포

구의회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회기일정이 총 8회/ 97일로 계획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업 계약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해 보면 한 회기에 약 5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 회의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민간위탁 계약 만료 기간과 구의회 회기와 맞추어 구의회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신년도 상임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시 일괄보고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함.

- 또한 동일한 수탁업체가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수탁을 원하는 타 업체 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결정되었더라도 구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는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민간위탁을 잘 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양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